

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화 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
 - 「공연법」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의 개정에 의하여 문화 분야의 관련 업무가 폐지, 변경 및 이관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[별표1] 중 1. 증명 바.지방세에 관한 증명 1) 납세증명(1통기준 800원)을 삭제함
 - [별표1] 중 문화체육관광 관계 : 항목신설 및 명칭변경
 - 공연법 제9조, 제39조 관련 : 공연장 등록신청(20,000원), 공연장변경 등록신청(5,000원)
 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, 제26조, 제41조 관련 :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(20,000원),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고 또는 등록 신청(20,000원), 청소년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(20,000원), 게임(제작, 배급)업 등록신청(20,000원), 게임관련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등록(5,000원)
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, 제36조, 제57조, 제58조, 제61조, 제90조 : 영화업신고(20,000원), 영화업변경신고(5,000원), 영화상영관등록신청(20,000원),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(5,000원), 비디오물(제작, 배급)업 신고(20,000원), 비디오물(제작, 배급)업 변경신고(5,000원)
-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, 제18조, 제21조, 제31조 관련 :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(20,000원),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(5,000원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회 흥완식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과 공연법등 문화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[별표1]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려는 것임.
- [별표1]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(1통기준 800원)를 삭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에서 삭제(10.1.1시행)됨에 따른 조치이며,
- [별표1] 신설 항목 중 영화업(변경)신고와 영화상영관(변경) 등록신청 관련 수수료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09.11.9시행)됨에 따라 영화업 신고 등 사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어 신설한 사항이 되겠으며
-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과, 비디오물(제작, 배급)업 신고, 비디오물(제작, 배급)업 변경신고 관련 수수료는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09.11.9시행)됨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시장·군수로 업무가 이관되어 신설한 사항이 되겠음.
- 기타 개정되는 문화관련 수수료는 「공연법」(08.2.29개정)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10.1.1개정), 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09.3.18

- 개정)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
 수수료 항목은 변경된 법에 따라 명칭변경 및 신설한 것이며
 수수료 금액은 업무의 성격과 기존 징수관행, 인근 자치단체 등의 징수사례 등을 참조하여 결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별도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답변자 : 세정과장)

- 질의) 제천시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수수료감면은 여기 없음.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감면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한부모가정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적용되는 대상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감면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함. (이정임 의원)
- 답변) 검토해 보겠음.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효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